

42년전 기억의 조각 맞추기...최면수사로 5·18 진실 밝힌다

진상조사위, 육분에 의뢰해 계엄군 4명·시민군 3명 대상 '법최면' 조사
"광주교도소 인근 시신 묻어라 지시...날 용서해 줄까요?" 참회의 눈물
'김군' 차복환씨도 진술 생생...최면 수사관 "신빙성 증명 뎀 증거 활용"

"전남대에서 시민들을 차에 하나 둘씩 태우고 최루탄을 터뜨렸어요. 한참 차를 달려 광주교도소에 도착하고 보니 태웠던 사람들이 죽어 있었어요. 시신을 차에서 내린 뒤 광주교도소 인근에 묻어버리라고 지시했어요. 저 사람들이 날 용서해 줄까요?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충남 계룡시의 육군본부 내에 마련된 최면실. 1980년 5월 3공수여단 지휘관급 직책을 갖고 무자비하게 광주 시민들을 짓밟았던 한 계엄군이 눈물을 흘렸다.

육군본부 소속 윤대중(52) 법최면 수사관에게서 최면수사를 받던 그는 눈을 감고 그 날을 떠올리며 공포의 눈물을 흘리고, 이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40 여년 세월 동안 차츰 잊혀졌던 그 날의 기억이 계엄군 당사자 입을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42년이 지난 5·18민주화운동의 기억의 파편을 되살리기 위해 과학수사가 진행돼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십년이 지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뇌에 저장된 기억을 되살리는 '법최면'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육군본부 육군수사단 과학수사센터에서 계엄군 4명, 시민군 3명 등 총 7명에 대한 법최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법최면'은 사건의 피해자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할 때, 잠재의 식 속에 감춰진 기억을 끌어내 물적 증거나 진술 증거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다.

최면수사를 활용하면 군 내에서 '분실한 총'도 찾을 수 있을 만큼, 당사자도 잊고 있던 기억까지 선명하게 되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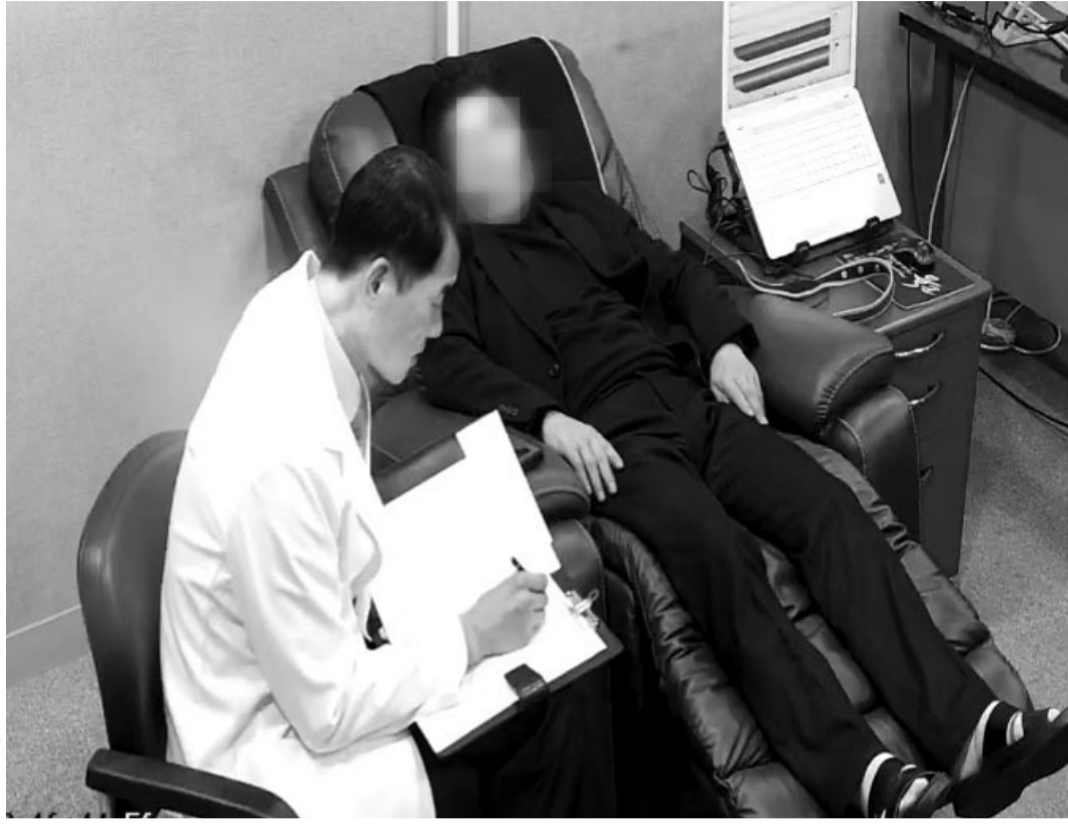
특히 시간이 많이 지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뭔가 보았지만 충격으로 기억할 수 없는 경우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조사위는 지난해 12월께 육군본부에 5·18 민주화운동 경험자들에 대한 법최면 수사를 의뢰했다. 계엄군과 시민군 모두 40년 이상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희미해진 상태라는 점에서 최면을 이용하여 그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면 수사를 도맡은 윤 수사관은 "직접 듣고도 믿지 못할 참혹한 이야기들이었다"고 최면수사 후기를 설명했다.

계엄군들이 시민들을 포박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검으로 찢어 죽이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다는 것이다. 당시 시민군들도 계엄군의 동승에 맞고, 동료의 머리 일부만이 대검에 맞아 날아가는 상황 등을 최면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특히 자루를 뒤집어쓰고 차에 실려갈 때의 느낌, 시민들의 시신을 거적으로 덮어놓고 '나중에 처리



윤대중(왼쪽) 법최면 수사관이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내 최면실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군을 최면 수사하고 있다. <육군본부 제공>

하자'고 했던 기억 등의 진술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다.

윤 수사관이 1년여 동안 최면수사를 벌인 대상은 3공수여단·11공수여단에 소속된 하사, 중사, 대위 등 계엄군 4명과 시민군 3명이다.

이 중 계엄군을 수사할 땐 전남대에서 광주교도소로 시신을 이송·매장하는 등 암매장 기억을 되짚는 것이 중심이 됐다.

지난해 5월에 본인이 '김군'이라고 밝힌 차복환 씨에 대해서도 법최면을 실시했다.

차 씨는 장갑차에 올라가 총을 들고, 머리피에 '석방하라'는 글씨를 써서 붙였다고 진술했다. 특히 시위 중 한 여성에게 '주먹밥을 받았다'는 등 모두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에피소드 메모리'를 말했다는 것이 조사위의 설명이다.

진술을 확보하면 최면에 참관한 조사위 위원들이 기존 5·18 관련자 면담 기록, 역사적 기록 등과 비교해 신빙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적 기록과 일치하는 사실, 다른 목격자와의 진술 일치 등을 통해 신빙성이 증명되면 해당 진술을 법정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윤 수사관 설명이다.

최면수사는 5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 최면을 유도하는 '인덕션'으로 시작해 더 깊은 최면에 걸리게 유도하는 '딥너', 목표 기억을 끌어내는 '체인지워크', 힌트 기억을 회상시키는 '앵커링', 최면에서 깨어나는 '엑스덕션' 순이다.

윤 수사관은 이 중 '앵커링' 단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18은 계엄군과 시민군 모두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만큼, 해당 기억을 회상시켜줘야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5·18 법최면 수사 도중 육군본부 최면실은 '눈물 바다'가 됐다고 윤 수사관은 전했다. 시민군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가족과 친구, 이웃들의 참변 소식을 떠올리며 아픈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계엄군 또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고 있었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윤 수사관은 "당사자들의 생생한 진술을 듣고 나면 향간에 떠도는 5·18 역사왜곡이 얼마나 허황된 소리인지, 1980년 광주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최면수사를 통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해 5·18 진상을 드러내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며 "아울러 5·18 북한군 침투설, 폭도설 등 왜곡된 역사가 아닌 올바른 역사 의식이 국민에게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풍향재개발 시공사 선정 부정청탁 홍보기획사와 대표 벌금 700만원 선고

광주시 북구 풍향재개발 시공사 선정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공사 선정을 부정 청탁한 홍보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 의정 부장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홍보기획사에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홍보기획사 실운영자인 A씨는 2019년 9월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과 홍보용역 계약을 맺고 같은 해 10월부터 11월 사이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향음 등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활동비 명목으로 청구하면 보전해주시기로 공모하고 총 549만원 상당의 금품·향음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보요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직접 현물을 주거나 교환권

을 주는 방식으로 과일·전복·한우·화장품·의류 등 다양한 금품과 향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재개발정비사업에서 A씨와 소속 홍보요원들의 부정행위로 시공사 선정 업무에 관한 공정성이 침해돼 시공사 선정 계약이 취소되고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귀속됐다"면서 "전체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A씨와 기획사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풍향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19년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다가 시공사로 포스코건설로 결정됐다. 하지만 용역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선정이 취소됐다가 지난해 10월 롯데·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주말·휴일 전남 화재·폭발사고 잇따라

주말사이 전남지역에서 화재와 폭발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6일 오전 7시 40분께 순천시 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80대 여성 A씨가 대피했고 주택은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에서 음식물 조리 중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새벽 4시 40분께 완도군 완도를 해변공원 선착장에서는 선박 6척에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다.

완도해경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선 2척이 전소됐고, 다른 어선 2척과 전남도청 소속 어업지도선 2척의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밤 9시께 화순군 화순읍의 한 아파트 주방에서는 가스 유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A씨가 무릎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요리를 하려고 가스레인지를 켜 뒤, 1~2분 뒤 평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했다"는 진술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택시기사 사납금 공제 후 급여’ 최저임금법 위반”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사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약 대법관)는 기사 6명이 A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기존 사납금 제도 대신 기사들의

수입 전부를 거둔 뒤 일괄적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했다.

미리 정한 사납금 월 275만 원에 못 미치는 수익을 낸 기사들에게 부족한 만큼을 '가불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했고, 일부 기사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아 "가불금 명목으로 사납금 부족분을 공제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기사들은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이라도 달라고 청구했다.

1~3심 모두 사납금을 미리 정하고 부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선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최저임금을 달라는 예비적인 청구에 관해선 판결이 계속 엇갈리다 결국 대법원은 "사납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 대상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협의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